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과태료)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13.

파 주 시



1. 대상업체 처분 내역

업체명 (대표자)	처분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과태료 (처분일)	처분사유	처분근거
케이빌더(주) (최상열)	실내건축공사업 (고양2019-01-03)	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133번길 81	300,000원 (2026.8.13.)	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	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

2. 기타사항

- 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(<http://kiscon.net>)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다.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도로건설과(☎031-940-46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